



2024. 2. 1.(목)
제 349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

검 토 보 고 서

【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

1. 충청남도교육청 한국교육삼락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2. 충청남도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3.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4. 충청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45
5. 충청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7
6.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9
7.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83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충청남도교육청 한국교육삼락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4년 1월 9일 방한일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4년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696호
- 제 출 자: 방한일 의원
- 제출일자: 2024년 1월 9일
- 회부일자: 2024년 1월 15일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교원들이 충청남도 교육삼락회 활동을 통해 지역 청소년 선도 및 학부모교육, 그리고 학교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충남교육삼락회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충청남도 사회공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나. 충남교육삼락회 회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충남교육삼락회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라. 충남교육삼락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회원)에서는 충남교육삼락회의 회원은 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충남교육삼락회에 가입한 사람으로 규정함
 - 안 제4조(책무)에서는 충남교육삼락회는 회원의 복리증진과 충청남도민의 문화향상, 지역발전, 사회공익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함
 - 안 제5조(지원)에서는 교육감은 충남교육삼락회가 ❶ 법 제6조에 따른 사업 ❷ 청소년 선도를 위한 홍보 및 봉사활동 ❸ 학교 방과 후 교육 봉사활동 ❹ 교육감이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사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퇴직교원의 교육활동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 봉사와 학교교육 활동 지원 등 충남교육삼락회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안 제5조 예산지원 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와 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적절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참고 사항

가. 관련법규

-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법률 제11212호, 2019. 8. 1.)

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2023.12.29., 예산과)

라.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2023.12.29., 예산과)

마. 규제심사: 해당되지 않음(2023.12.29., 예산과)

바. 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교육청 한국교육삼락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한국교육삼락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충청남도교육청 한국교육삼락회”(이하 “충남교육삼락회”라 한다)란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에 있는 한국교육삼락회 지부 및 지회를 말한다.

제3조(회원) 충남교육삼락회 회원은 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충남교육삼락회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책무) 충남교육삼락회는 회원의 복리증진과 충청남도민의 문화향상, 지역발전, 사회공익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남교육삼락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사업
2. 청소년 선도를 위한 홍보 및 봉사활동
3. 학교 방과 후 교육 봉사활동

4. 교육감이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충남교육삼락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 지원법 [법률 제11212호, 2019. 8. 1]

제1조(목적) 이 법은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韓國教育三樂會)를 설립하여 청소년 선도, 학부모 교육, 학교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 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회원의 자격) 삼락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국립·공립·사립 학교의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및 교육전문직으로 퇴직한 사람
2. 자문회원: 삼락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를 받거나 자문을 하기 위하여 위촉한 사람
3. 명예회원: 삼락회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4. 특별회원: 삼락회의 운영협찬을 위하여 위촉한 교육 기관 및 단체

제5조(조직 등) ① 삼락회는 본부·지부(支部) 및 지회(支會)를 두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지회는 시·군·구에 둔다.

② 삼락회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사업) 삼락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활동
2. 학생교육활동의 지원과 지도
3. 인성교육과 상담활동
4. 교육정책 모니터활동
5. 각급 교육기관에 대한 협조

6. 모범교육자 표창 및 교육유공자 발굴 격려
7. 시민문화 향상을 위한 봉사활동
8. 그 밖에 삼락회의 목적 사업에 필요한 사업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

평가대상 (자치법규명)	『충청남도교육청 한국교육삼락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평가담당	(소속) 감사관	(직급)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성명) 유정기
소관부서	행정과	통보(조치)일	2023. 12. 26.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6조(예산지원)	○ <u>개선 권고</u>	○ 보조·지원의 사용한계(목적 외 사용금지)와 지원 대상 선정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 위법·부당한 보조·지원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 절차와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의 공개 규정 마련이 필요함. ○ 특정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특혜제공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목적에 부합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정산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불법·부당집행에 대한 제재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6조(현재 5조) :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보조금의 절차마련, 투명성제고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마련되어 있음 (미반영)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한국교육삼락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나, 예산을 편성하여 기 시행 중에 있어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조례안은 한국교육삼락회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안 제5조)
 - (안 제5조) 충남교육삼락회는 평생교육활동, 청소년 선도 활동, 각종 봉사활동 등의 교육활동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5조(지원)는 충남교육청에서 충남교육삼락회의 청소년 선도, 인성·예절 교육 등 평생교육 및 봉사활동 사업 지원을 기 추진중에 있고, 향후에도 계속 추진 예정인바 조례안의 시행으로 인해 추가 재정 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그 밖의 조항(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담당관
예산분석팀장
주무관

예산정책담당관
조중연
박재용
홍종식

☎ 041-635-5210(budget20@korea.kr)

[참고-1] 충남교육삼락회 현황

【 지역별 교육삼락회 현황 】

○ 총괄: 지부 1곳 / 지회 6곳

지역	단체명	관할 교육청	비 고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삼락회	충청남도교육청	지부(시·도)
공주시	공주교육삼락회	공주교육지원청	지회(시·군·구)
논산시	논산교육삼락회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지회(시·군·구)
계룡시	계룡교육삼락회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지회(시·군·구)
금산군	금산교육삼락회	금산교육지원청	지회(시·군·구)
부여군	부여교육삼락회	부여교육지원청	지회(시·군·구)
예산군	예산교육삼락회	예산교육지원청	지회(시·군·구)

자료: 충남교육청 제공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참고-2] 충남교육삼락회 보조금 지원 현황

【 기 추진 사업 현황 】

○ 사업명/부서 : 민간단체지원 / 행정과, 교육지원청

(단위: 천원)

부서(기관)	사업내용	예산액		비 고
		‘23년(추경포함)	‘24년(예산안)	
행정과	충청남도교육삼락회 활동 지원	40,000	40,000	안 제5조
공주	공주교육삼락회 활동 지원	4,000	4,000	안 제5조
논산계룡	논산교육삼락회 활동 지원	4,000	4,000	안 제5조
논산계룡	계룡교육삼락회 활동 지원	3,000	3,000	안 제5조
금산	금산교육삼락회 활동 지원	3,000	3,000	안 제5조
부여	부여교육삼락회 활동 지원	3,000	3,000	안 제5조
예산	예산교육삼락회 활동 지원	3,000	3,000	안 제5조
합 계		60,000	60,000	

자료: 2023년도 교특회계 세출예산서, 2024년도 교특회계 예산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4년 1월 9일 구형서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4년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699호
- 제 출 자: 구형서 의원
- 제출일자: 2024년 1월 9일
- 회부일자: 2024년 1월 15일

2. 개정 이유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유·초등 공동교육과정 운영 및 소규모 학교 적정규모화 추진으로 인해 소규모 유치원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작은 학교’의 정의에 작은 학교 내 병설유치원을 포함 하여 소규모 유치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여건 개선, 교육복지 증진, 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안 제2조)

‘작은 학교’의 정의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충청남도 소재 학교뿐만 아니라 작은 학교 내 병설유치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4. 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작은 학교’의 범위가 확장되어,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 내 병설유치원도 포함한 소규모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지원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예상되는 예산의 증가분에 대한 확보 방안과 작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세부 지원계획 수립 등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참고] 시·도교육청 조례 제개정 현황

지역	자치법규명	제개정일자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1. 7. 14.
울산	울산광역시 작은 학교 지원 조례	2020. 12. 24.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작은 학교 활성화 조례	2022. 4. 15.

광주	광주광역시 작은학교 및 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5. 30.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11. 20.
경기	경기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4. 10.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6. 2.
충북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3. 17.
충남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2021. 9. 30.
전북	전라북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2017. 1. 31.
전남	전라남도 작은학교 지원 조례	2018. 3. 29.
경남	경상남도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2022. 7. 7.

5.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나. 관련법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2023.12.20.,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라.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2023.12.26., 감사관)

마. 규제심사: 해당되지 않음(2023.12.20., 정책기획과)

바. 비용추계서 비대상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중 작은 학교 내 병설유치원을 말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 1. “학교”란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작은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u>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작은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중 작은 학교 내 병설유치원을 말한다.</u>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소재 작은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교육복지 증진, 예산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 발전과 연계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적정규모로 학교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9. 30.>

1. “학교”란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신설 2021. 9. 30.>
2. “작은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신설 2021. 9. 30.>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작은 학교 학생의 교육 기회 균등과 학습권 보장을 통하여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해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종합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1. 9. 30.>

1. 작은 학교 지원 사업 및 예산지원 계획
2. 작은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지원
3.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
4. 지역사회와 연계된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5. 재학 중인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6. 동일학군 지역 통학버스 공동운영

7. 농어촌 유학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부모,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작은 학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2. 교육 시설 환경 개선 및 현대화 사업

3. 교육 복지 증진 및 방과 후 돌봄 사업

4. 학생에 대한 통학 편의 제공

5.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

6. 그 밖에 작은 학교 육성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방법)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및 대상 학교 등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선정 학교가 적정규모 학교로 안착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

제7조(예산의 지원)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지원 사업의 목적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시장·군수와 예산 분담을 협의할 수 있다.

제8조(교직원 배치)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정수의 교직원이 배치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작은 학교 근무를 희망하는 교원을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작은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21.9.30>

제9조(교직원 우대) ①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직원이 학생의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인사상 우대 및 국내외 연수기회를 우선 제공하거나 업무경감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근무여건 등에 대한 편의를 마련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작은 학교 교직원이 근무지 지역에 거주하면서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편의 제공을 적극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학생 유입 방안) ① 교육감은 학생 유입을 통한 작은 학교 활성화를 위해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학생 유입을 위한 행정·재정적 방안을 강구한다.

제11조(작은 학교 지원 위원회 설치) ① 작은 학교 지원 육성 시책과 사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작은 학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종합계획 <개정 2021. 9. 30.>
2. 종합계획에 따른 각종 시책
3. 지원사업 및 대상학교 선정
4.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원활한 작은 학교 운영을 위해 교육감 및 관계 기관의 정책에 자문을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은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9. 30.>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하고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

1. 전·현직 교육 공무원 2인, <개정 2021. 9. 30.>

2. 학부모 대표 2인 및 교육관련 시민단체 2인

3. 관련부서 국·과장

4. 그 밖에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위촉 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0.>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소집·안건상정 및 회의를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을 선출하는 직무는 부교육감이 대행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 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한 경우 위원장은 해당 회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교육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개정 2021. 9. 30.>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약칭:농어업인삶의질법)[법률 제18527호, 2021. 11. 30.]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2.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농어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촌 주민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촌주민을 말한다.
4. “농어촌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
5. “공공서비스”란 주거·교통·교육·보건의료·복지·문화·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6. “농어촌서비스기준”이란 농어업인등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9738호, 2023. 9. 27.]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유아교육법[법률 제19737호, 2023. 9. 2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4. 삭제 <2012. 3. 21.>
5. 삭제 <2012. 3. 21.>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비 대 상 사 유 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나, 예산을 편성하여 기 시행 중에 있어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충청남도 작은 학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에 따라 비용 발생
- 안 제2조(정의)는 작은 학교의 정의에 병설유치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 따른 작은 학교 지원 비용이 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충남교육청에서 소규모 유치원 공동교육과정 운영비 지원 사업을 기 추진중에 있고, 향후에도 계속 추진 예정인바 조례 개정안으로 인해 추가 재정 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교육혁신과) 현행 조례에 근거하여 ‘충남 작은 학교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해 학생 수 60명 이하 초·중학교를 지원하고 있고,
- (교육과정과) 소규모 유치원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유치원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참고] 소규모 유치원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 현황

【 기 추진 사업 현황 】

○ 사업명/부서 : 소규모유치원공동교육과정운영 / 교육과정과, 교육지원청

(단위: 천원)

기관(부서)	사업내용	예산액		비 고
		2023년	2024년	
교육과정과	소규모 유치원 공공교육과정 운영 지원	330,000	330,000	안 제2조
천안	소규모 유치원 공공교육과정 운영 지원	15,000	4,500	안 제2조
아산	소규모 유치원 공공교육과정 운영 지원	9,000	9,000	안 제2조
논산계룡	소규모 유치원 공공교육과정 운영 지원	10,000	8,000	안 제2조
당진	소규모 유치원 공공교육과정 운영 지원	6,000		안 제2조
부여	소규모 유치원 공공교육과정 운영 지원	11,000		안 제2조
합 계		381,000	351,500	

자료: 2023년도/202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정은주

☎ 041-635-5210(budget20@korea.kr)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4년 1월 10일 구형서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4년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705호
- 제 출 자: 구형서 의원
- 제출일자: 2024년 1월 10일
- 회부일자: 2024년 1월 15일

2. 개정 이유

- 충청남도의 자립에너지 정책의 일환인 신·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스마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충청남도교육청의 자립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교육감의 책무(안 제4조)

- 체계적인 신·재생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통합관리와 유지보수 이력관리에 노력해야 함

나. 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18조)

-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규정함

다. 시스템 유지 및 관리(안 제19조)

-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유지관리 대책 수립 및 데이터수집장치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규정함

라. 통계관리 및 공시(안 제20조)

-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이력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충청남도 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공시하도록 규정함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책무) 교육감은 체계적인 신·재생에너지 관리시스템을 구축으로 통합관리와 유지보수 이력관리에 대해 노력할 것을 규정함

- **안 제18조(시스템의 구축·운영)**에서는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시스템은 ❶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시 관제를 위한 데이터수집장치 연계가능 ❷ 신·재생에너지의 통신주기별 운전상태 및 발전량 관계 ❸ 자리 정보에 기반한 시설의 위치정보제공 ❹ 유지보수 이력 통합 이력관리 ❺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기간 자동안내 ❻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 ❼ 사후초지 관리 ❽ 탄소중립 이행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등의 기능을 갖추도록 규정함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19조(시스템 유지 및 관리)**에서는 교육감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총괄 관리책임자를 두고,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고,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데이터수집장치를 설치하여 시스템에 연계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20조(통계관리 및 공시)**에서는 교육감은 소속 기관이 관리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이력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에 공시하여야 함을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의 자립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스마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실효성 있고 체계적인 통합관리와 지속적인 유지보수 이력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참고 사항

- 가.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 나.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사항 없음(2024.1.8.,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라.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2024.1.8., 감사관)
- 마. 규제심사: 해당되지 않음(2024.1.8., 정책기획과)
-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제21조로 하고,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며, 제4조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책무) 교육감은 체계적인 신·재생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통합관리와 유지보수 이력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
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이
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시 관제를 위한 데이터수집장치 연계기능
2. 신·재생에너지의 통신주기별 운전상태 및 발전량 관제
3. 지리 정보에 기반한 시설의 위치정보제공
4. 유지보수 이력 통합 이력관리
5.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기간 자동 안내
6.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
7. 사후조치 관리

8. 탄소중립 이행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9.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시스템 유지 및 관리) ① 교육감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를 둔다.

② 교육감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시스템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데이터수집장치를 설치하여 시스템에 연계하여야 한다.

제20조(통계관리 및 공시) 교육감은 소속 기관이 관리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이력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충청남도교육청 누리집에 공시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4조 ~ 제16조</u> (생략) <u><신 설></u>	<u>제4조(책무) 교육감은 체계적인 신 · 재생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통합관리와 유지보수 이력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u> <u>제5조 ~ 제17조</u> (현행 제4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 <u>제18조(시스템의 구축 · 운영) ①</u> <u>교육감은 신 ·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신 · 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이하 “시스템” 이라 한다)을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u> <u>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u> <u>1. 신 · 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시 관제를 위한 데이터수집장치 연계기능</u> <u>2. 신 · 재생에너지의 통신주기별 운전상태 및 발전량 관제</u> <u>3. 지리 정보에 기반한 시설의 위치정보제공</u>

<신 설>

4. 유지보수 이력 통합 이력관리

5.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기간 자동 안내

6. 점점의 온라인 입력 · 관리

7. 사후조치 관리

8. 탄소중립 이행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9. 그 밖에 신 ·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시스템 유지 및 관리) ①

교육감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를 둔다.

② 교육감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시스템의 효율적

<u>〈신 설〉</u> <u>제17조 (생 략)</u>	<u>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u> <u>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u> <u>수를 위탁할 수 있다.</u> <u>④ 교육감은 시스템 유지 및</u> <u>관리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u> <u>설비에 데이터수집장치를 설치</u> <u>하여 시스템에 연계하여야 한</u> <u>다.</u> <u>제20조(통계관리 및 공시) 교육</u> <u>감은 소속 기관이 관리하는 신</u> <u>·재생에너지 설비의 이력을</u> <u>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충청남</u> <u>도교육청 누리집에 공시하여야</u> <u>한다.</u> <u>제21조 (현행 제17조와 같음)</u>
---	---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풍력 등의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2. “유지관리”란 완공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기능을 보존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비를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일상점검”이란 신·재생에너지 설비 유지관리 담당자가 설비의 발전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여 장비의 이상 여부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정기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정기적으로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내재되어 있는 이상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각급 공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민간위탁 운영 형태의 학교는 제외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 계획
2.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적정유지 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
3.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실시
4.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예산 확보

제5조(유지 관리기준의 설정)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효율적 운전에 필요한 세부 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6조(신·재생에너지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종류와 설치방법, 용량 등의 계획 수립

2. 신·재생에너지 유지관리 계획 수립과 변경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등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감 소속 시설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사람
2. 교육·환경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육감 소속 공무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남도교육청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업무담당이 된다.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점검) ① 학교장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관하여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일상점검은 일별 발전량 또는 열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작성을 포함하도록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 또는 신·재생에너지설비 교육을 이수한 자로 신·재생에너지설비 점검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유지관리) 학교장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유지관리를 해야 하며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설비 종류별 일일 발전량 또는 열량 누적 자료 보관
2. 태양광발전장치 및 태양열설비는 수시로 집광판 청소 실시
3. 지열 설비는 일상점검을 할 때 펌프의 가동 상태 확인

제14조(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조치) ① 학교장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상 문제가 인정되는 경우

사용제한·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하고 복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5조(신·재생에너지 이용에 관한 교육) 학교장은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학교에 설치된 설비 전반에 관한 교육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지원) 교육감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4호 생략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호 생략

부패영향평가

1. 검토의견(감사관)

평가대상 (자치법규명)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소속) 감사관	(직급)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성명) 유정기
소관부서	시설과	통보(조치)일	2024. 1. 8.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19조(시스템 유지 및 관리)	○ 개선 권고	○ 위탁의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위법·부당한 위탁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제기 및 그에 대한 처리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위탁의 행정목적이 달성되도록 대상기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 등 합리적인 통제장치나 수탁 기관 또는 직원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대비해 충분한 제재수단 구비 필요.	

2. 반영여부 : 미반영

- 조례 개정 후 세부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18조(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9조(시스템 유지 및 관리)
 - 신·재생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 및 유지 관리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스마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신·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사업 소관부서인 시설과에서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비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중이며,

< 연구용역비 예산 편성 현황 >

(단위: 천원)

부 서	사 업 명	2024년도 예산액	비 고
시설과	신재생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구축	50,000	
	연구용역	50,000	

※ 자료: 2024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서를 바탕으로 작성

- 사업의 규모, 범위 및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현 시점에서는 재정 소요를 기술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참고로, 충청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충청남도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통합플랫폼 사업’의 경우 통합플랫폼 구축에 약 2년간(’21. 4월 ~ ’23. 5월) 총415,100천원, 운영(유지 관리비 포함)에 연간 3천만원의 재정이 소요되고 있음(※참고자료 첨부)

○ 그 밖의 조항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정은주

☎ 041-635-5210(budget20@korea.kr)

□ 충청남도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 통합플랫폼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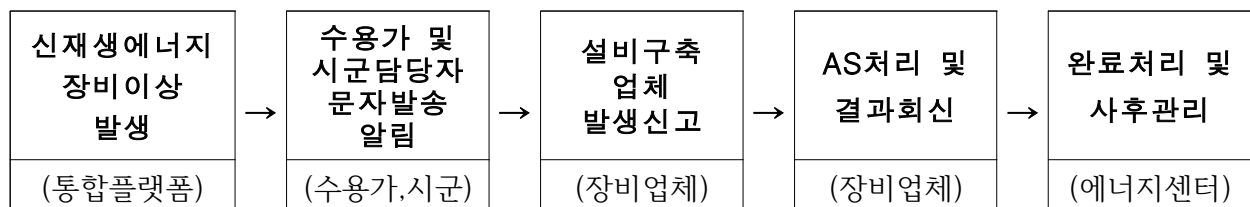
- 플랫폼명: 충청남도 신재생에너지 스마트 통합플랫폼
- 추진목적: 도내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실시간 모니터링 및 통합관리
- 구축현황: 통합플랫폼 구축, 데이터수집장치(RTU) 설치, 관리시스템 구축 등
- 추진현황

구 분	1단계('21.4. ~ '21.10.)	2단계('21.12. ~ '22.4.) (* 서비스 시작)	3단계('22.12. ~ '23.5.)
절 차	시스템 구축(시범 운영)	플랫폼 확대 구축	플랫폼 데이터 통합 · 확산
내 용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플랫폼 고도화	서버 기능 및 데이터 확대
목 표	시군별 시범사업(97개)	지원서비스 확대(179개)	지원서비스(12,000개 이상)
업 체	(주)SR에너지 대표 조흥기	(주)SR에너지 대표 조흥기	(주)제이케이코어 대표 김창준
금 액	219,800천원	109,000천원	86,300천원

- 기간 : 약 2년간 (21.4월 ~ 23.5월)
- 금액 : 총 4억원 (415,100천원)
- 업체 : (주)SR에너지(천안 소재), (주)제이케이코어(천안 소재)

- 운영방안 : 충남에너지센터 운영 (※ 운영비용 : 연간 3천만원)

- 신재생에너지 장비 이상 발생 시 처리과정



- 홈페이지 주소 : <http://cnrems.or.kr>

자료: 충청남도 산업경제실 탄소중립경제과

충청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4년 1월 8일 홍성현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4년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691호
- 제 출 자: 홍성현 의원
- 제출일자: 2024년 1월 8일
- 회부일자: 2024년 1월 15일

2. 제정 이유

학부모의 학생 교육 역할을 강화하고 올바른 학생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부모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학부모교육을 실시하여 가정의 교육력을 회복하고 올바른 학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 수립·시행(안 제4조)

-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나. 학부모교육(안 제5조)

- 학부모와 학생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과 올바른 학부모 역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다. 학부모지원센터(안 제7조)

- 효율적인 학부모교육 추진을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위탁(안 제8조)

- 학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 학부모교육 지원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책무)**에서는 충청남도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에서는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방향 및 목표, 지원체계 및 예산확보 방안, 학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 학부모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5조(학부모교육)**에서는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① 학부모와 학생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② 올바른 학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③ 학생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④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⑤ 학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6조(지원)**에서는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7조(학부모지원센터)**에서는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부모교육 추진을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8조(위탁)**에서는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9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지원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학부모와 학생 간 이해, 올바른 학부모 역할,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을 위한 학부모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6조(지원) 및 안 제8조(위탁)는 학부모교육을 추진하는 사업비 지원과 사업의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합리적인 지원 기준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안 제7조(학부모지원센터) 학부모교육 추진을 위한 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에 있어 조직의 구성,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참고】 시·도교육청 조례 제개정 현황

지역	자치법규명	제개정일자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020. 7. 16.
대전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조례	2017. 7. 7.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지원 조례	2023. 3. 2.
전북	전라북도교육청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의 학교 참여 지원 조례	2021. 7. 9.

5.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
- 건강가정기본법
- 평생교육법

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2023.12.06.,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라.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2023.12.06., 감사관)

마. 규제심사: 해당되지 않음(2023.12.06., 정책기획과)

바. 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충청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의 학생 교육 역할을 강화하고 올바른 학생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부모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학부모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법령에 따른 보호·감독자 등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학부모교육”이란 학부모의 역할 수행과 교육 활동 참여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등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3. “학생”이란 충청남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부모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원체계 및 예산확보 방안
3. 학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

4.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5. 협력체계 구축
6. 그 밖에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부모교육)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학부모와 학생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2. 올바른 학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3. 학생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4.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5. 학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
6. 그 밖에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6조(지원)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학부모지원센터)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부모교육 추진을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탁)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지원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규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9738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건강가정기본법 [법률 제17280호, 2020. 5. 19., 일부개정]

제26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부모교육·가족상담·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건강가정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혼준비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윤리교육
4.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평생교육법[법률 제19431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29조(학교의 평생교육)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평생교육의 이념에 따라 교육과정과 방법을 수요자 관점으로 개발·시행하도록 하며, 학교를 중심으로 공동체 및 지역문화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각 급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학생·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의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 급 학교의 교실·도서관·체육관, 그 밖의 시설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학교를 개방할 경우 개방 시간 동안의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으나, 예산을 편성하여 기 시행 중에 있어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첨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조례안은 학부모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여 가정의 교육력을 회복하고 올바른 학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임(안 제4조~제9조)
 - (안 제4조) 학부모 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 사업 기반 구축 등 학부모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안 제5조) 학부모와 학생 간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등 6개 분야 학부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 (안 제6조) 학부모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7조) 효율적인 학부모 교육을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8조) 학부모 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학부모 교육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9조) 학부모 교육 지원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는 충남교육청에서 수립·시행하고 있는 연도별 '학부모 종합 지원정책 계획'에 일부 내용을 포함하고 있

- 어, 추가 보완을 통해 기본계획을 갈음함을 전제하여 비용 미발생
- 안 제5조(학부모교육), 안 제7조(학부모지원센터)는 충남교육청에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교육 자료 제작, 학부모 교육 콘텐츠 제작, 학부모 지원센터 운영 등 학부모 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기 추진중에 있고, 향후에도 계속 추진 예정인바 조례안의 시행으로 인해 추가 재정 소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추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안 제6조(지원), 안 제8조(위탁), 안 제9조(협력체계 구축)는 학부모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 사업 위탁,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구체적인 범위나 내용에 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재정 소요를 추계하기 어려움
 - 그 밖의 조항(안 제1조, 제2조, 제3조)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홍종식

 041-635-5210(budget20@korea.kr)

충청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4년 1월 9일 윤희신 의원 대표 발의로 제출되어
2024년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701호
- 제 출 자: 윤희신 의원
- 제출일자: 2024년 1월 9일
- 회부일자: 2024년 1월 15일

2. 제정 이유

- 충청남도 교육기관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안 제4조, 제5조) 기본계획 및 지원
- (안 제6조, 제7조) 화재대피 훈련 및 체험시설 설치·운영
- (안 제8조) 홍보

4. 검토 의견

- (주요 조문별 검토) 본 조례안의 주요 조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교육감의 책무)에서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관의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발생 시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을 규정함
 - 안 제4조(기본계획)에서는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피난기구 설치 및 유지를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 하며 ① 기본방향 및 목표, ② 피난기구 설치 현황, ③ 추진계획 및 설치 방안, ④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함을 규정함
 - 안 제5조(지원)에서는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피난기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안 제6조(화재대피 훈련 등)에서는 교육감은 실습·체험 위주의 화재대피 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대피 훈련이 실습과 체험 위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소방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함
- 안 제7조(체험훈련 설치·운영)에서는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은 체험훈련을 위하여 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안 제8조(홍보 등)에서는 교육감은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홍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교육기관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화재 대피 교육훈련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아무리 좋은 피난기구가 설치되었다고 해도 사용법에 미숙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므로 실습·체험 위주의 화재 대피 훈련 및 교육을 통해 완벽히 사용법을 숙지하여 유사시 화재 피난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재대피 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시·도교육청 조례 제개정 현황

지역	자치법규명	제개정일자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	2020. 12. 10.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6. 4.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	2021. 9. 16.
세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	2021. 11. 10.

5.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의견 없음(2023.10.24., 성별영향평가 책임관)

라. 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 없음(2023.10.24., 감사관)

마. 규제심사: 해당되지 않음(2023.10.24., 정책기획과)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교육기관의 화재 피난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충청남도에 있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소속기관
2. “피난기구”란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써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관의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발생 시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피난기구 설치 및 유지를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피난기구 설치 현황
3. 추진계획 및 설치 방안
4.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피난기구 설치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피난기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화재대피 훈련 등) ① 교육감은 실습·체험 위주의 화재대피 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대피 훈련이 실습과 체험 위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소방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체험시설 설치·운영)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은 체험훈련을 위하여 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등) 교육감은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 홍보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유아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7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8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

3. 피난구조설비: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

가. 피난기구

- 1) 피난사다리

- 2) 구조대
- 3) 완강기
- 4) 간이완강기
- 5)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으로 정하는 것

나. 인명구조기구

- 1) 방열복, 방화복(안전모,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 2) 공기호흡기
- 3) 인공소생기

다. 유도등

- 1) 피난유도선
- 2) 피난구유도등
- 3) 통로유도등
- 4) 객석유도등
- 5) 유도표지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안 제5조(지원)

-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피난기구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

- 자치법규 입법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충청남도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안의 내용이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

- 안 제5조는 교육기관의 피난기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음
- 또한,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할 피난기구의 종류, 물량 등 세부적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고, 피난기구 설치 범위나 소요에 있어 유동성이 크므로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재정 소요를 추계하기 곤란함

○ 충남교육청 소관부서에서 자체 추진이 가능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기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비용추계 제외

- 안 제4조는 교육기관의 피난기구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충남교육청에서 자체 수립·시행이 가능하여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 안 제6조는 화재대피 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체험위주 훈련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재난안전포털 사회재난행동요령(화재) 등 교육자료 활용이 가능하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 안 제7조는 체험훈련을 위한 체험시설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있으나,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에서 화재대피 등 안전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 안 제8조는 화재예방 및 화재발생 시 대피요령 홍보 추진을 규정하고 있으나, 각급학교 등에서 소방훈련 실시 및 화재발생 시 대피요령 등에 대한 홍보(가정통신문 발송 등)를 실시하고 있고, 교육기관별 자체 홍보가 가능함에 따라 비용추계에서 제외함

○ 그 외 조항(안 제1조, 제2조, 제3조)은 비용 발생과 무관

4. 작성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중연

예산분석팀장 박재용

주 무 관 홍종식

☎ 041-635-5210(budget20@korea.kr)

다시 도망쳐도 안전한 나라
감염 질환의 국경이 사라

국가안전
최우선의
알아보기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맵

안내도우미

ENG

재난예방대비

민방위

풍수해·시민안전보험

재난심리상담

재난현황

참여와 신고

↑

재난예방대비

국민행동요령

사회재난행동요령

사회재난행동요령

f

t

y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 아래의 재난을 클릭하시면 행동요령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화재 ▶	산불 ▶	건축물붕괴 ▶
폭발 ▶	교통사고 ▶	전기·가스사고 ▶
철도, 지하철 사고 ▶	유도선 사고 ▶	해양 선박사고 ▶
식용수 ▶	원전사고 ▶	공동구재난 ▶
대규모수질오염 ▶	가축질병 ▶	댐붕괴 ▶
정전 및 전력부족 ▶	금융전산 ▶	감염병예방 ▶
해양오염사고 ▶	화학물질사고 ▶	항공기사고 ▶

사회재난행동요령

f

t

y

화재

간략보기(텍스트위주)

화재 ▼

이동

< 이전화면

1 2 3 4

□ 국민이 안전이와 함께하는 화재 안전수칙

화재

화재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접하게 되는 재난 중 하나로 화재발생의 주된 원인은 사람들의 부주의와 방심에 의한 것입니다. 사전예방과 주의 깊은 점검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한 화재예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화재관련 자료실

[참고-2]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 안전체험활동 프로그램


충청남도교육청안전수련원
CHUNGCHONGNAMDŌ OFFICE OF EDUCATION SAFETY TRAINING INSTITUTE

[처음으로](#) | [로그인](#) |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수련원소개](#)
[체험수련활동](#)
[안전체험활동](#)
[부여교육가족체험장](#)
[정보공개](#)
[열린마당](#)

안전체험활동

운영안내 및 프로그램

[▶ 운영안내 및 프로그램](#)
[▶ 교육일정표](#)
[▶ 예약하기](#)
[▶ 체험관 안내](#)

[▶ 2023년 안전체험교육 기본과정 운영 개요](#)

- ☒ 운영프로그램 : 안전체험관 학생 안전교육,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교육
- ☒ 운영 대상 : 도내 초·중·고·특 학생
- ☒ 운영 기간 : 2023.3.27.(월)~12.15.(금)
- ☒ 운영 내용 : 학교안전교육 7대 표준안 따른 영역별 안전체험

[▶ 안전체험교육 기본과정 프로그램 안내](#)

- ☒ 안전체험관 학생 안전교육
 - 교육 인원 : 1일 최대 90명, 연간 9천명 내외
 - 운영 시간 : 09:50~14:30, 1일 3차시

사전안내 (10분)	1교시 (60분)	2교시 (60분)	점심시간 (70분)	3교시 (60분)
09:50~10:00	10:00~11:00	11:15~12:15	12:15~13:30	13:30~14:30

※ 참여 학교의 요구에 따라 운영 시간 변경 가능합니다.

- ☒ 교육 내용

영역	위치	체험실수	교육내용	시간
생활안전	1층	6	생활안전, 승강기안전, 야영장안전, 물놀이안전 산업현장안전, 장애이해체험	60분
교통·재난안전	2층	7	교통안전, 실감형교통안전, 지진안전, 초기진화 비상탈출, 재난상황, 완강기	60분
생명존중	3층	5	응급처치, 자기성장, 중독예방, 생명존중, 학교폭력 예방	60분

※ 학교 급, 참여 인원, 요청 시간 등에 따라 일부 체험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학교로 찾아가는 안전교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4년 1월 11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719호
- 제 출 자: 충청남도교육감
- 제출일자: 2024년 1월 11일
- 회부일자: 2024년 1월 15일

2. 개정 이유

- 「교육기본법」 제1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감이 설치·경영하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2024. 3. 1. 자로 폐지되는 중학교 1개교를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2024. 3. 1. 자 학교 폐지 (중학교 1개교: 창기중학교)

4. 검토 의견

○ (개정이유)

「교육기본법」 제1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2024. 3. 1. 폐지되는 창기중학교에 대해 「충청남도 도립 학교 설치 조례」 별표 2의 내용을 개정함 (창기중학교 삭제)

현행			개정안		
〔별표 2〕 중학교			〔별표 2〕 중학교		
연번	명칭	위치	연번	명칭	위치
1~140	(생략)		1~140	(현행과 같음)	
141	창기중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황도로3-16		<삭제>	
142~145	(생략)		141~144	(현행 142~145와 같음)	
	태안군(8교)			태안군(7교)	

○ (개정내용)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에 있는 창기중학교는 2023학년도 신입생이 0명이었고 학생 수가 점차 감소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준에 따라 인근 안면중학교로 통폐합하게 됨

❖ 2023~2025 창기중 학생 수 현황

(단위: 명, 2023. 9. 1.기준)

연도	1학년	2학년	3학년	합계
2023	-	5	4	9
2024(예상)	-	-	5	5
2025(예상)	3	-	-	3

❖ 통폐합 개요

- 통폐합 일자: 2024. 3. 1.
- 통합되는 학교: 안면중학교
- 폐교되는 학교: 창기중학교
- 교직원 현황
 - 창기중(15명): 교원 9명, 행정직 2명, 교육공무직 4명
 - 안면중(26명): 교원 15명, 행정직 3명, 교육공무직 8명
- 2024. 3. 통폐합 후 예상 학급 및 학생 수

(단위: 학급, 명, 2023. 9. 1.기준)

학교명	1학년		2학년		3학년		계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안면중 (통합학교)	2	39	2	38	2	39	7	116

※ 안면중(7학급): 1학년(2학급), 2학년(2학급), 3학년(2학급), 특수학급(1학급)

○ (종합의견)

- 창기중학교는 2023학년도 신입생 의무취학 대상자가 0명으로 충청남도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준에 따라 통폐합 추진 과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24. 3. 1. 자 폐지 학교에 대한 교직원 인사, 학교회계 통합, 폐지학교의 교육재산 관리, 각종 기록물 관리 등의 이관과 행정 처리에 있어 집행부의 세밀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나. 관련법규

- 「교육기본법」 제11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다. 입법예고: 의견없음(2023. 10. 30.~2023. 11. 20.)

라.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2023. 11. 7., 민주시민교육과)

마. 부패영향평가: 제외대상(감사관)

바. 규제심사: 해당없음(정책기획과)

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치의 특례) 신설학교의 위치는 도로명주소 부여 후에는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반영되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중학교

연번	명칭	위치
1	천안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90
2	천안북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188
3	천안여자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거리11길 31
4	천안동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363-11
5	천안성정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중2길 40
6	천안봉서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미라1길 48
7	천안부성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공대길 45-9
8	천안쌍용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12길 13
9	천안두정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길 26
10	천안오성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고1길 25
11	천안성성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부성1길 83
12	천안백석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1길 56
13	환서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한들3로 50
14	천안신방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신촌4로 46
15	천안불당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11로 35
16	천안월봉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45
17	천안용곡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새말1길 51-14
18	천안새샘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통정6로 49
19	천안가운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83
20	천안불무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23로 30
21	성환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2로 79
22	병천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충절로 1872
23	입장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연곡길 36
24	목천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방로 145
25	천남중학교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신사대화로 403
	천안시(25교)	
26	공주중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왕릉로 111
27	봉황중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금벽로 301
28	공주여자중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용당길 54
29	유구중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중앙1길 49-10
30	탄천중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통산로 168
31	정안중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정안중앙길 89-6
32	우성중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구례말길86
33	반포중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원당1길 28
34	사곡중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293-106
35	이인중학교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금광로 12-5
	공주시(10교)	
36	대천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남로 23
37	대천여자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옥갯티1길 31
38	한내여자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옥마로 200
39	대천서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항로 212
40	웅천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방축길 87

연번	명 칭	위 치
41	보령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보령읍성길 87-37
42	천북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천북면 천광로 107
43	청라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대청로 804
44	남포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남포면 야동2길 24
45	주산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주산면 만세운동길 58
46	미산중학교	충청남도 보령시 미산면 관미로 1462-7
	보령시(11교)	
47	온양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온중로 48
48	온양용화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어의정로 101
49	온양여자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온여고길 21번길 22
50	온양신정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333번길 31
51	송남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송악면 송악로 714번길 37
52	아산배방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216
53	설화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연화로 56
54	모산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90
55	탕정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로 53-40
56	한들물빛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매곡중앙3로 35
57	아산갈산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 605번지
58	음봉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음봉면 음봉로 505
59	아산테크노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밸리북로 32
60	영인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영인면 아산온천로3번길 17
61	인주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영인산로 85
62	선도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서부남로 21
63	도고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도고산로 573
64	신창중학교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834
	아산시(18교)	
65	서산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덕지천로 90
66	서산여자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정주골 6길 11
67	서산석림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동서2로 8
68	서산부춘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부춘2로 42
69	해미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남문2로 93
70	부석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무학로 1034
71	서산명지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명지1로 15
72	성연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성연면 성연로 210-4
73	고북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고북면 고북1로 320-1
74	음암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음암면 칠거리로 147
75	인지중학교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무학로 1654-9
	서산시(11교)	
76	논산중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 397번길 28
77	논산여자 중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 347번길 21
78	강경중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28
79	강경여자중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강경읍 계백로 200
80	연무중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 160번길 26-2
81	노성중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노성면 노성로 602-5
82	연산중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청동로 113-14

연번	명칭	위치
83	광석중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광석로 56-3
84	가야곡중학교	충청남도 논산시 가야곡면 덕은로 160
	논산시(9교)	
85	용남중학교	충청남도 계룡시 신도안면 신도안2길 66
86	엄사중학교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번영11길3
87	계룡중학교	충청남도 계룡시 서금암 5길 17
	계룡시(3교)	
88	당진중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운학길 41
89	당진중학교대호지분교장	충청남도 당진시 대호지면 4.4만세로 75-22
90	원당중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밤절로 72-34
91	수청중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수청동 692번지
92	합덕중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면천로 1601
93	합덕여자중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면천로 1583
94	면천중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면천서문1길 35
95	순성중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톨모시로 146
96	송산중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도문로 48
97	고대중학교	충청남도 당진시 고대면 고대로 215
	당진시(10교)	
98	금산중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탑선길 5
99	금산동중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용머리길 25
100	금산여자중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인삼로11
101	제원중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금강로 61
102	부리중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부리면 말골길 57
103	진산중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 대둔산로 413
104	복수중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복수로 333
105	추부중학교	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마전2길 21
	금산군(8교)	
106	부여중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석탑로 14
107	부여여자중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월함로 34
108	홍산중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홍산면 홍산로 112-25
109	임천중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성흥로 210
110	은산중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충의로 729
111	석성중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석성면 증산로 7
112	세도중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부흥로 564-4
113	양화중학교	충청남도 부여군 양화면 충절로 267-6
	부여군(8교)	
114	장항중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서로 16번길 79
115	서천중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충절로 97
116	서천여자중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청로 84
117	한산중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한마로 130번길 31
118	비인중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비인면 비인로 142
119	서면중학교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서인로 777번길 3
	서천군(6교)	
120	청양중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179
121	정산중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역말길 42

연번	명칭	위치
122	화성중학교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 무한로 226-15
	청양군(3교)	
123	홍성중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 994
124	홍성여자중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도청대로 29-21
125	광천중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 광천로 396-34
126	내포중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학로 41
127	갈산중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갈산면 상촌로 9번길 39
128	홍동중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광금남로 735
129	홍성서부중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서부면 서부로 411
130	금마중학교	충청남도 홍성군 금마면 철마산길 182
	홍성군(8교)	
131	예산중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예중길 40
132	예산여자중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197-17
133	대술중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대술로 135-7
134	삼교중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삼교로 173
135	덕산중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예화로 128
136	고덕중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예덕로 546
137	신암중학교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신암남로 413
	예산군(7교)	
138	태안중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중앙로 115
139	태안여자중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다락미4길 27
140	안면중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조운막터길 43
141	남면중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남면로 125
142	근흥중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 근흥로 690
143	만리포중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소원면 소근로 63-12
144	원이중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원북면 마산길 180
	태안군(7교)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2〕 중학교			〔별표 2〕 중학교		
연번	명칭	위치	연번	명칭	위치
1~140	(생략)		1~140	(현행과 같음)	
141	창기중학교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황도로3-16		<삭 제>	
142~145	(생략)		141~144	(현행 142~145와 같음)	
	태안군(8교)			태안군(7교)	

관련법규

□ 교육기본법[법률 제19736호, 2023. 9. 27. 시행]

제11조(학교 등의 설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평생교육 시설을 설립·경영한다. <후략>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19343호, 2023. 10. 19. 시행]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학예의 시설·설비 및 교구(教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 13. 특별부과금 · 사용료 · 수수료 · 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 14. 기채(起債) · 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 15. 기금의 설치 · 운용에 관한 사항
-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17. 그 밖에 해당 시 · 도의 교육 · 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조례 개정에 따른 재정 수반요인(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제2호
- 제4조(대상의안) ① 비용추계 대상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학교 폐지로 인해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별도의 추가 소요 경비 없음

4.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국 학교지원과장 이병철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검 토 보 고

동 조례안은 2024년 1월 11일 충청남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제 720호
- 제 출 자: 충청남도교육감
- 제출일자: 2024년 1월 11일
- 회부일자: 2024년 1월 15일

2. 개정 이유

- 2024. 3. 1. 자로 폐지되는 학교를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2024. 3. 1. 자 폐지되는 학교 반영을 위해,
 - (태안) 창기중학교(창기학구)를 삭제
 - 기존 창기학구였던 초등학교를 안면학구로 변경

4. 검토 의견

○ (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라 지역 · 학교
군 · 중학구 및 추천방법은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함

○ (종합의견)

- 2024. 3. 1. 자 창기중학교에 취학 예정자가 없어 충청남도태안
교육지원청 행정예고 절차와 학부모 동의를 통해 안면중학교로
통폐합하고,
- 창기학구에서 창기중학교를 삭제하고 기존 창기학구였던 초등
학교를 안면학구로 변경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5. 참고 사항

- 가.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천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 나. 신규 대비표
- 다. 관련 법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마. 기타

행정예고: 2023. 9. 27.(수) ~ 10. 17.(화) [태안교육지원청 실시]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결한다.

I.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개정안은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학교군(18학군)

시군	학군별	중 학교 명			해 당 초 등 학 교 명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천안	천안 1 학 군	천안중성중	천안여중 복자여중	천안북중 천안동중 천안성정중 천안부성중 천안두정중 천안오성중 천안성성중 천안백석중 천안가온중 환서중	남·여 공 통	천안부대, 천안업성, 양당, 직산(단, 판정리 거주 학생 중 입장학구 희망자 제외), 삼은, 소망, 천안부성, 천안신대, 천안두정, 천안오성, 환서, 천안서, 천안차암, 천안백석, 천안한들, 천안기온, 성거, 천안신부, 천안, 천안신안, 안서, 천안중앙, 천안남산, 천안구성, 천안청수, 천안삼거리, 천안청당, 천안성성, 천안희망, 천안기람, 천안능수, 미죽(남관1·4리 제외), 도장, 행정(유천2리 1~2반, 행정리, 대평리, 원덕리, 다만, 전의중 희망자 제외), 천안부영, 소정(전의중 희망자 제외), 동방(천안시 거주자), 신계(목천학구 희망자 제외), 신흥(목천학구 희망자 제외), 신흥(천안시 거주자), 천안학군 졸업(예정)자 중 광풍학구·천남학구 희망자 제외
	천안 2 학 군	천안매곡중	천안서여중	천안봉서중 천안쌍용중 천안신방중 천안불당중 천안용곡중 천안월봉중 천안새샘중 천안불무중	남·여 공 통	천안불당, 천안서당(아산시 거주자 제외), 천안용암, 천안쌍용, 천안미라, 천안월봉, 천안봉서, 천안성정, 천안몽명, 천안와촌, 천안불무, 천안아름, 천안일봉, 천안쌍정(아산시 거주자 제외), 천안수곡, 천안신촌, 천안신용, 천안용곡, 천안용소, 천안청룡, 천안새샘, 천안호수(아산시 거주자 제외), 미죽(남관1·4리), 용정(남관2·3리), 천안2학군 졸업(예정)자 중 광풍학구·천남학구 희망자 제외
	성환학군			성환중 동성중	남·여 공 통	성환, 성신(아산시 거주자 제외), 신방(아산시 거주자 제외), 쌍룡(아산 음봉학구 희망자 제외), 도하, 신가(신가리, 복모리, 와룡리 제외), 대홍(양령1,2리, 안궁리 제외), 성환학군 졸업(예정)자 중 광풍학구·천남학구 희망자 제외

시군	학군별	중 학 교 명			해 당 초 등 학 교 명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공주	공주학군	공주중 공주영명중	공주여중 공주북중	공주사대부중	남·여 공·통	공주중동, 공주금학, 공주봉황, 공주교동, 공주신월, 태봉, 효포, 신관, 의당, 수촌, 귀산, 공주교대부설, 상서(방문리, 상서리, 옥성리 제외), 계룡(기산리), 우성(오동리, 죽당리, 어천리5반), 목면(어천리1~4반), 석송(평정1,2리, 화봉1,2리, 상룡리), 공주학군 졸업(예정)자 중 탄천학구 · 이인학구 · 정안학구 · 경천학구 · 우성학구 · 반포학구 · 사곡학구 희망자 제외
보령	대천학군	대천중 대명중			남학생	대천, 대남, 한내, 대천동대, 관창, 송학, 장고분교장, 대관, 성주, 삼시분교장, 청파초 외연도분교장, 개화, 청룡(남곡동), 명천, 청파(녹도리, 호도리), 광명(대천서중학구 희망자 제외), 대천학군 졸업(예정)자 중 보령학구 · 천북학구 · 청라학구 · 주산학구 · 남포학구 · 미산학구 희망자 제외
			대천여중 한내여중		여학생	대천, 대남, 한내, 대천동대, 청룡(남곡동), 대관, 명천, 청파초 외연도분교장, 장고분교장, 삼시분교장, 청파(녹도리, 호도리), 광명(대천서중학구 희망자 제외), 대천학군 졸업(예정)자 중 보령학구 · 천북학구 · 청라학구 · 주산학구 · 남포학구 · 미산학구 희망자 제외
아산	온양학군	온양중 아산중	온양여중 온양한울중	온양용화중 온양신정중	남·여 공·통	온양, 온양온천, 온양동신, 온양초사, 온양천도, 신리, 신광, 온양중앙, 용화, 온양권곡, 온양신정, 온양풍기, 금곡, 염티(서원2리 제외), 송곡, 충무, 아산, 온양학군 졸업(예정)자 중 송남학구 희망자 제외
	배방학군			아산배방중 모산중	남·여 공·통	배방, 모산, 아산북수, 아산공수, 용정(갈매2리), 배방학군 졸업(예정)자 중 송남학구 희망자 제외
	둔포학군			아산테크노중 둔포중	남·여 공·통	관대, 남창, 둔포, 염작, 신방(아산시 거주자), 성신(아산시 거주자)
	설화학군			설화중 한들물빛중	남·여 공·통	동방(천안시 거주자 제외), 연화, 아산용연, 한들물빛, 아산세교, 천안서당(아산시 거주자), 천안쌍정(아산시 거주자), 천안호수초(아산시 거주자)

시군	학군별	중 학교 명			해 당 초 등 학 교 명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서산	서산학군	서 산 중	서 산 여 중	서산석림중 서산부춘중 서령중	남·여 공·통	서산, 서동, 오산(귀밀리, 웅소성리 제외), 서령, 부춘, 서림, 차동, 동암(신장1리, 부장1리, 유계1리 제외), 학돌, 서산석림, 서산예천, 서산동문, 서산서남, 서산학군 졸업(예정)자 중 팔봉학구·대철학구·부석학구·고북학구 희망자 제외
논산	논산학군	논 산 중 논산대안중 기민중	논 산 여 중 쌍뿔여중		남·여 공·통	논산부창, 논산반월, 왕전, 논산동성, 채운(장화1리, 삼거1리 제외), 원봉, 성덕, 성동(월성리 제외), 부적, 감곡, 논산중앙, 은진, 광석(득윤리 전지역, 갈산1리 2,3반, 갈산2리), 논산내동, 논산학군 졸업(예정)자 중 광석학구·연산학구 희망자 제외
당진	당진학군			당진중 원당중 호서중 수청중	남·여 공·통	당진, 성당(대운산리-가지매기, 굴미마을 제외), 계성, 탑동, 당산(당산리, 금암리), 순성(갈산리), 기지(시곡리, 가교2리), 면천(죽동리, 용연2리), 천의[두산1리 2반, 3반(뽕골제외), 4반(고티마을 제외)제외], 정미(수당리 중 대철학구 희망자 제외), 원당, 삼봉초, 난지분교, 대덕, 수청, 당진학군 졸업(예정)자 중 고대학구·석문학구·면천학구·순성학구·송산학구·대호지학구 희망자 제외
	합덕학군	합 덕 중	합 덕 여 중	서 야 중	남·여 공·통	합덕[합덕리, 하흑리, 옥금리, 도리, 점원리(하점원, 중점원), 신흥리(상동), 예산군 신암면 하평2리(4반), 송산 1리(2·3반 일부)제외], 신촌(성동리), 우강(송산1·2·3리, 세류리, 원신흥리 제외)
금산	금산학군	금 산 중	금 산 여 중	금 산 동 중	남·여 공·통	금산중앙, 금산, 금산동, 금성, 용문, 금계분교장(마수1리), 진산(건천1리), 남일, 남이, 금산학군 졸업(예정)자 중 진산학구·부리학구·제원학구 희망자 제외
서천	서천학군		서 천 여 중 서림여중		여학 생	서천, 서남, 송석, 부내, 시초, 문산, 마동(산내리), 서천학군 졸업(예정)자 중 한산학구·비인학구·서면학구·동강학구·판교학구 희망자 제외

시군	학군별	중 학교 명			해 당 초 등 학 교 명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청양	청양학군		청 신 여 중	청 양 중	남·여 공 통	청양, 청송, 수정, 운곡(광암리, 추광리, 미량리 중 예산 신양학군 희망자 제외, 신양면 가지리 거변 제외), 남양(금정리, 온직리), 가남(옥계리 제외)
홍성	홍성학군	홍 성 중 홍 주 중			남학생	홍성(신성리·원천리 제외), 홍주, 홍남, 내포덕산학군(홍성군 소재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희망자, 배양(장성리·신곡리), 용봉, 구항, 대정(마온리·청광리), 수덕(광천 1리 제외, 내포덕산학군 희망자 제외), 은하(유송리·대천리·학산리 중 내동 거산마을, 장곡리·대율리·금곡리), 장곡(행정리, 천태리, 산성리), 갈산(갈오리), 장곡·금당(월계리 중 홍성학군 희망자), 결성(홍성학군 희망자), 은하(학산리 중 학동, 내남마을, 목현리, 덕실리 중 홍성학군 희망자), 홍성학군 졸업(예정)자 중 홍성서부학구·갈산학구·금마학구·홍동학구 희망자 제외
홍성·예산	내포덕산학군			내 포 중 덕 산 중	남·여 공 통	내포, 한울, 홍북, 내포덕산학군(홍성군 소재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홍성학군·홍성학구·홍성서부학구·갈산학구·금마학구·홍동학구 희망자 제외 덕산, 시량, 봉산(시동리), 수덕(광천1리, 홍성학군·홍성학구 희망자 제외), 용동(가리), 보성, 삼교(송산리, 상하리, 가리), 내포덕산학군(예산군 소재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고덕학구·삼교학구 희망자 제외

2. 중학구(108학구)

시군	학 구 별	중학교명			해 당 초 등 학 교 명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천 안 (5 개 학구)	입장학구			입 장 중	남·여 공 통	입장, 양대, 산평(도림1리), 직산(판정리 거주학생 중 희망자)
	병천학구			병 천 중	남·여 공 통	병천, 천동(화덕1,2리 제외)
	광풍학구			광 풍 중	남·여 공 통	풍세, 광덕, 용정(남관2·3리, 갈매2리 제외), 보산원, 천안학군·성환학군 졸업(예정)자 중 광풍학구 희망자
	목천학구			목 천 중	남·여 공 통	목천, 신계(천안1학군 희망자 제외), 은석, 위례, 신흥(천안1학군 희망자 제외)
	천남학구			천 남 중	남·여 공 통	성남, 신사, 수신, 천안학군·성환학군 졸업(예정)자 중 천남학구 희망자
공 주 (8 개 학구)	탄천학구			탄 천 중	남·여 공 통	탄천(운암리 5반 제외), 공주학군 졸업(예정)자 중 탄천학구 희망자
	이인학구			이 인 중	남·여 공 통	이인, 탄천(운암리 5반), 공주학군 졸업(예정)자 중 이인학구 희망자
	정안학구			정 안 중	남·여 공 통	정안, 마곡[유룡리, (회학리·월가리 중 사곡학구 희망자제외)], 석송(평정1·2리, 화봉1·2리, 상룡리제외), 공주학군 졸업(예정)자 중 정안학구 희망자
	유구학구			유 구 중	남·여 공 통	유구, 구산, 덕암, 신평
	경천학구			경 천 중	남·여 공 통	경천, 계룡(기산리 제외), 상월[지경2리, 월오2리, (대촌1~2리, 대우리, 대명1~2리, 상도1~3리, 석종1~3리 중 논산 노성학구 희망자 제외)], 공주학군 졸업(예정)자 중 경천학구 희망자
	우성학구			우 성 중	남·여 공 통	우성(오동리, 죽당리, 어천리 5반 제외), 상서(방문리, 상서리, 옥성리), 공주학군 졸업(예정)자 중 우성학구 희망자
	반포학구			반 포 중	남·여 공 통	반포, 학봉, 공주학군 졸업(예정)자 중 반포학구 희망자
	사곡학구			사 곡 중	남·여 공 통	호계, 마곡[유룡리 제외, 회학리·월가리 중 정안학구 희망자 제외)], 공주학군 졸업(예정)자 중 사곡학구 희망자

시군	학 구 별	중학교명			해 당 초 등 학 교 명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보령 (9개 학구)	대천학구		대천여중		여학생	관창(보령학구 희망자 제외), 송학(보령학구 희망자 제외), 성주, 개화(미산학구 희망자 제외)
	대 천 서중학구			대 천 서 중	남·여 공 통	청룡(남곡동 제외), 청파(녹도리, 호도리 제외)대천학군의 광명초 졸업(예정)자 중 대천서중학구 희망자
	보령학구			보 령 중	남학생	주포, 오천, 청소(재정1리, 죽림리 제외), 대천학군 졸업(예정)자 중 보령학구 희망자
					여학생	주포, 오천, 청소(재정1리, 죽림리 제외), 관창(대천학구 희망자 제외), 송학(대천학구 희망자 제외), 대천학군 졸업(예정)자 중 보령학구 희망자
	웅천학구			웅 천 중	남·여 공 통	웅천, 대창, 관당, 주산(증산3리)
	주산학구			주 산 중	남·여 공 통	주산(증산3리 제외), 대천학군 졸업(예정)자 중 주산학구 희망자
	천북학구			천 북 중	남·여 공 통	천북, 낙동(신죽리, 신덕리 중 흥성 광천학구 희망자 제외), 대천학군 졸업(예정)자 중 천북학구 희망자
	청라학구			청 라 중	남·여 공 통	청라, 옥계, 청보, 대천학군 졸업(예정)자 중 청라학구 희망자
	미산학구			미 산 중	남학생	미산, 대천학군 졸업(예정)자 중 미산학구 희망자
					여학생	미산, 개화(대천학구 희망자 제외), 대천학군 졸업(예정)자 중 미산학구 희망자
	남포학구			남 포 중	남·여 공 통	남포, 월전, 대천학군 졸업(예정)자 중 남포학구 희망자
아산 (8개 학구)	선도학구			선 도 중	남·여 공 통	선장, 도고온천(신언리)
	인주학구			인 주 중	남·여 공 통	인주, 금성
	신창학구			신 창 중	남·여 공 통	오목, 신창, 아산남성
	음봉학구			음 봉 중	남·여 공 통	음봉(신수리 제외), 월랑, 쌍룡(천안 성환학군 희망자 제외), 동덕(음봉면 산동리 중 음봉학구 희망자), 산동(아산시거주자)
	도고학구			도 고 중	남·여 공 통	도고, 도고온천(신언리 제외)
	송남학구			송 남 중	남·여 공 통	송남, 거산, 온양학군 · 배방학군 졸업(예정)자 중 송남학구 희망자
	영인학구			영 인 중	남·여 공 통	영인, 신화, 음봉(신수리), 염티(서원2리)
	탕정학구			탕 정 중	남·여 공 통	탕정, 탕정미래, 동덕(음봉면 산동리 중 음봉학구 희망자 제외), 아산갈산

시군	학 구 별	중학교명			해 당 초 등 학 교 명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서 산 (11개 학구)	대철학구			대 철 중	남·여 공 통	운산, 운신(원벌리, 거성1리, 용현리, 서산학군 거주자 중 희망자), 정미(수당리 중 대철학구 희망자), 운산·운신(상성리 중 음암학구 희망자 제외), 성당(대운산리-가지매기, 굴미마을), 서산학군 졸업(예정)자 중 대철학구 희망자
	해미학구			해 미 중	남·여 공 통	해미, 언암(신정리·신상2리 3,4반 중 고북학구 희망자 제외), 운신(신창리, 홍천리, 관유리, 삼송리, 거성3리), 오산(귀밀리, 웅소성리)
	부석학구			부 석 중	남·여 공 통	부석, 간월도분교장, 강당, 가사, 서산학군 졸업(예정)자 중 부석학구 희망자
	인지학구			인 지 중	남·여 공 통	인지
	대산학구			대 산 중	남·여 공 통	대산, 부성(환성 1·2·3리, 대요 1·2리 중 대산학구 희망자)
	명지학구			서 명 지 중	남·여 공 통	명지, 서산대진
	성연학구			성 연 중	남·여 공 통	성연(율목1리 제외), 부성(무장3·4리 중 성연학구 희망자)
	고북학구			고 북 중	남·여 공 통	고북, 언암(신정리·신상2리 3,4반 중 고북학구 희망자), 서산학군 졸업(예정)자 중 고북학구 희망자
	음암학구			음 암 중	남·여 공 통	음암, 동암(신장1리, 부장1리, 유계1리, 서산학군 거주자 중 희망자), 성연(율목1리), 운산·운신(상성리 중 대철학구 희망자 제외), 운신(거성2리)
	팔봉학구			팔 봉 중	남·여 공 통	팔봉(도내2리 1반 제외, 도내1리 중 태안 태안학구 희망자 제외), 서산학군 졸업(예정)자 중 팔봉학구 희망자, 화동[인평1리(흔진다리) 2리, 3리 중 서산 팔봉학구 희망자]
	서일학구			서 일 중	남·여 공 통	부성(환성 1·2·3리, 대요 1·2리 중 대산학구 희망자 제외, 무장 3·4리 중 성연학구 희망자 제외)

시군	학 구 별	중학교명			해 당 초 등 학 교 명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논 산 계 룡 (10개 학구)	연무학구	연 무 중	연무여중		남·여 공 통	구자곡, 연무[(황화정1(6·7반 제외)·2리, 봉동리, 고내리, 마전리(신양, 주촌마을 제외)], 연무중앙, 이화
	강경학구	강 경 중	강경여중		남·여 공 통	강경중앙, 강경산양, 강경황산, 성동(월성리, 병촌리, 우곤리, 개척1.2리), 채운(장화1리, 삼거1리), [전북 흥왕(대조리, 두무, 비야마을), 망성(내촌리, 동촌마을, 어량리, 상발, 중발, 하발, 호천, 야정), 성북]
	가 야 곡 학 구			가야곡중	남·여 공 통	가야곡(병암리 제외), 양촌(가야곡면 양촌리)
	건양학구			건 양 중	남·여 공 통	반곡(거사1.2리, 신흥1·2리, 반곡1리), 양촌(가야곡면 양촌리 제외)
	노성학구			노 성 중	남·여 공 통	노성, 상월[지경2리, 월오2리 제외, (대촌 1리~2리·대우리·대명 1리~2리·상도 1리~3리·석중 1리~3리 중 공주경천학구 희망자 제외)],
	연산학구			연 산 중	남·여 공 통	연산, 청동, 백석, 반곡(거사1·2리, 신흥1·2리, 반곡1리 제외), 가야곡(병암리) 논산학군, 용남학구·엄사학구·계룡학구 졸업(예정)자 중 연산학구 희망자
	광석학구			광 석 중	남·여 공 통	광석(득윤리 전지역, 갈산1리2·3반, 갈산2리 제외), (부여)초촌[(송정리, 진호리, 소사리, 산직1리, 산직2리(삼가마을 제외)중 광석학구 희망자)], 논산학군 졸업(예정)자 중 광석학구 희망자
	용남학구			용 남 중	남·여 공 통	용남(연산학구 희망자 제외)
	엄사학구			엄 사 중	남·여 공 통	엄사, 신도 엄사학구 졸업(예정)자 중 연산학구 희망자 제외
	계룡학구			계 룡 중	남·여 공 통	벌곡(대전 우명동 제외), 도산(행정리 제외), 두마(대전 진장동 9·10통 제외), 금암, 계룡학구 졸업(예정)자 중 연산학구 희망자 제외

시군	학 구 별	중학교명			해 당 초 등 학 교 명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당 진 (10개 학구)	합덕학구	합 덕 중	합덕여중		남·여 공 통	합도, 북창(상오리, 아찬리, 신송1.2리 제외), 우강 [(송산1리(1반, 2·3반 일부, 4·5반), 송산2리, 송산3리, 세류리, 공포리, 신촌리), 합덕(송산1리(2·3반 일부)]
	면천학구			면 천 중	남·여 공 통	면천(죽동리, 용연2리 제외), 당진학군 졸업(예정)자 중 면천학구 희망자
	석문학구			석 문 중	남·여 공 통	삼봉, 초락, 석문(삼화리, 성산리 제외) 삼봉초난지분교, 당진학군 졸업(예정)자 중 석문학구 희망자 [삼봉초난지분교, 삼봉초(소난지도)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하는 중학교군 · 중학구와 공동학구]
	송악학구			송 악 중	남·여 공 통	송악, 상록, 기지(시곡리, 가교2리, 본당리, 청금리, 봉교리, 광명리 1반 제외), 전대 (금곡리, 영천리1반)
	고대학구			고 대 중	남·여 공 통	고대, 고산, 석문(삼화리, 성산리), 당진학군 졸업(예정)자 중 고대학구 희망자
	신평학구			신 평 중	남·여 공 통	신평, 한정, 전대(금곡리, 영천리 1반 제외), 북창(신송1.2리, 상오리, 아찬리 4·5반), 서정, 우강[부장리, 신흥1리 (통포원), 신송2리(지나들기)], 기지 (본당리1·2·3·5반, 청금리, 봉교리, 광명리1반)
	순성학구			순 성 중	남·여 공 통	순성(갈산리 제외), 북창(아찬리 4,5반 제외), 기지(본당리 4반), 당진학군 졸 업(예정)자 중 순성학구 희망자
	송산학구			송 산 중	남·여 공 통	송산, 유곡, 당산(당산리, 금암리 제외), 당진학군 졸업(예정)자 중 송산학구 희망자
	서야학구			서 야 중	남·여 공 통	합덕[(합덕리, 하흑리, 옥금리, 도리, 점원리(하점원, 중점원), 신흥리(상동), 신석리, 예산군 신암면 하평2리(4반)], 신촌(성동리, 상궁1리 제외), 우강(원 신흥리)
	대 호 지 학 구			당 진 중 대 호 지 분 교 장	남·여 공 통	조금, 천의(두산1리 2,3,4반, 단, 3반 백골, 4반 고티마을 제외), 당진학군 졸업(예정)자 중 대호지학구 희망자

시군	학 구 별	중학교명			해 당 초 등 학 교 명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금 산 (5 개 학구)	부리학구			부 리 중	남·여 공 통	부리, 전북 부당(전북 부남학구 희망자 제외), 금산학군 졸업(예정)자 중 부리학구 희망자
	진산학구			진 산 중	남·여 공 통	진산(건천1리 제외), 도산(행정리), 금산학군 졸업(예정)자 중 진산학구 희망자
	추부학구			추 부 중	남·여 공 통	추부, 성대, 금계분교장(마수1리 제외), 군북(동편리, 조정리), 복수(다북 2리, 목소리, 용진 1~3리 중 추부학구 희망자)
	복수학구			복 수 중	남·여 공 통	복수(다북 2리, 목소리, 용진 1~3리 중 추부학구 희망자 제외), 신대(지량리 제외)
	제원학구			제 원 중	남·여 공 통	제원, 군북(동편, 조정리 제외), 상곡, 금산학군 졸업(예정)자 중 제원학구 희망자
부 여 (10개 학구)	부여학구	부 여 중	부여여중		남·여 공 통	부여, 백제, 송간, 백강, 대왕, 궁남, 장암(지토3,4리 중 임천학구 희망자 제외), 임천(지토3,4리 중 부여학구 희망자), 마정(점상1리 중 부여학구 희망자), 부여학구 졸업(예정)자 중 임천학구·외산학구·용강학구 희망자 제외
	홍산학구			홍 산 중	남·여 공 통	홍산(송학리, 조현2리, 무정리 제외), 옥산, 마산(나궁리, 군간리, 관포리), 충화(임천학구 희망자 제외), 마정(점상1리 제외)
	백제학구			백 제 중	남·여 공 통	규암, 합송(구봉1리 제외)
	은산학구			은 산 중	남·여 공 통	은산, 장평(죽림리)
	외산학구			외 산 중	남·여 공 통	외산, 내산(온해리, 지티리, 금지리 중 외산학구 희망자), 부여학구 졸업(예정)자 중 외산학구 희망자
	임천학구			임 천 중	남·여 공 통	마정(점상1리 중 부여학구 희망자 제외), 충화(홍산학구 희망자 제외), 임천(지토3,4리 중 부여학구 희망자 제외), 장암(지토3,4리 중 임천학구 희망자), 부여학구 졸업(예정)자 중 임천학구 희망자
	용강학구			용 강 중	남·여 공 통	구룡, 용당, 내산(온해리, 지티리, 금지리 중 외산학구 희망자 제외), 홍산(송학리, 조현2리, 무정리), 합송(구봉1리), 부여학구 졸업(예정)자 중 용강학구 희망자

시군	학 구 별	중학교명			해 당 초 등 학 교 명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석성학구			석 성 중	남·여 공·통	석성, 석양, 초촌[송정리, 진호리, 소사리, 산직1리, 산직2리(삼가마을제외) 중 논산 광석학구 희망자 제외]
	세도학구			세 도 중	남·여 공·통	세도
	양화학구			양 화 중	남·여 공·통	양화(시음1,2리, 상촌1,2리 제외)
서 천 (7 개 학구)	서천학구	서 천 중			남학생	서천, 서남, 송석, 부내, 시초, 마동(산내리), 문산, 서천학구 졸업(예정)자 중 한산학구·비인학구·서면학구·동강학구·판교학구 희망자 제외
	장항학구			장 항 중	남·여 공·통	장항, 장항중앙, 마동(산내리 제외), 화양, (장상리, 망월리), 송림, 장항학구 졸업(예정)자 중 한산학구·비인학구·서면학구·동강학구·판교학구 희망자 제외
	한산학구			한 산 중	남·여 공·통	한산, 화양(봉명리, 고마리, 창외리, 금당리, 장상리, 망월리 제외), 마산(나궁리, 군간리, 관포리 제외), 기산(이사리), 양화(시음1,2리, 상촌1,2리), 서천학군·서천학구·장항학구 졸업(예정)자 중 한산학구 희망자
	동강학구			동 강 중	남·여 공·통	기산(이사리 제외), 화양(봉명리, 고마리, 창외리, 금당리), 서천(기산면 원길리(원길) 중 희망자), 도내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사회적 배려대상자로서 희망자, 서천학군·서천학구·장항학구 졸업(예정)자 중 동강학구 희망자
	비인학구			비 인 중	남·여 공·통	비인, 서천학군·서천학구·장항학구 졸업(예정)자 중 비인학구 희망자
	판교학구			판 교 중	남·여 공·통	오성, 서천학군·서천학구·장항학구 졸업(예정)자 중 판교학구 희망자
	서면학구			서 면 중	남·여 공·통	서면, 서도, 서천학군·서천학구·장항학구 졸업(예정)자 중 서면학구 희망자
청 양 (3 개 학구)	동영학구			동 영 중	남·여 공·통	남양(금정리, 온직리 제외)
	정산학구			정 산 중	남·여 공·통	정산, 목면(어천리 제외), 미당, 장평(죽림리 제외), 청남
	화성학구			화 성 중	남·여 공·통	합천

시군	학 구 별	중학교명			해 당 초 등 학 교 명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홍 성 (7 개 학구)	홍성학구		홍성여중		여학생	홍성(신성리·원천리제외), 홍주, 홍남, 내포 덕산학군(홍성군 소재 초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희망자, 용봉, 구항, 수덕 (광천1리 제외, 내포덕산학군 희망자 제외), 은하(유송리·대천리·학산리 중 내동·거산 마을, 장곡리·대율리·금곡리), 배양(장성리· 신곡리), 갈산(갈오리), 대정(마온리·청 광리), 장곡(행정리·천태1리·산성리), 장곡· 금당(월계리 중 홍성학구 희망자), 결성 (홍성학구 희망자), 은하(학산리 중 학동· 내남마을·목현리·덕실리 중 홍성학구 희망자), 홍성학구 졸업(예정)자 중 홍성 서부학구·갈산학구·금마학구·홍동학구 희망자 제외
	금마학구			금 마 중	남·여 공 통	금마, 배양(장성리, 신곡리 제외), 결성 (금마학구 희망자), 은하(학산리 중 학동 ·내남마을·목현리·덕실리 중 금마학구 희망자), 홍성학군·홍성학구·내포덕산 학군(홍성군 소재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금마학구 희망자
	광천학구			광 천 중	남·여 공 통	광천, 장곡(행정리·천태리·산성리· 지정1리·월계리 제외), 청소(죽림리, 재정1리), 대정(마온리, 청광리 제외), 은하 (화봉리, 대판리), 서해삼육, 낙동(신죽리, 신덕리 중 광천학구 희망자), 결성(광천 학구 희망자), 은하(학산리 중 학동· 내남마을·목현리·덕실리 중 광천학구 희망자)
	홍성서부 학 구			홍 성 부 중	남·여 공 통	서부, 신당, 결성(홍성서부학구 희망자), 은하(학산리 중 학동·내남마을·목현리 ·덕실리 중 홍성서부학구 희망자), 홍성 학군·홍성학구·내포덕산학군(홍성군 소재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홍성서부학구 희망자
	갈산학구			갈 산 중	남·여 공 통	갈산(갈오리 제외), 결성(갈산학구 희망자), 은하(학산리 중 학동·내남마을·목현리 ·덕실리 중 갈산학구 희망자), 홍성학군 ·홍성학구·내포덕산학군(홍성군 소재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갈산학구 희망자
	홍동학구			홍 동 중	남·여 공 통	홍동, 금당(월계리 제외), 홍성(신성리· 원천리), 장곡(지정리1구), 홍성학군· 홍성학구·내포덕산학군(홍성군 소재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홍동학구 희망자
	권장학구			서 해 삼 육 중	남·여 공 통	도내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희망자

시군	학 구 별	중학교명			해 당 초 등 학 교 명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예 산 (9개 학구)	예산학구	예 산 중	예산여중		남·여 공 통	예산,금오,예산중앙,신례원,오가(신원리,원평리),평촌(입침리),응봉(노화리,지석리 제외), 예산학구 졸업(예정)자 중 고덕학구·신암학구·임성학구·신양학구·대술학구·광시학구·대흥학구 희망자 제외
	고덕학구			고 덕 중	남·여 공 통	고덕,구만,예덕,봉산(시동리 제외),신촌(상궁리1구),예산학구·내포덕산학군(예산군 소재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고덕학구 희망자
	삼교학구			삼 교 중	남·여 공 통	삼교(송산리,상하리,가리 제외),용동(가리 제외),내포덕산학군(예산군 소재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삼교학구 희망자
	신암학구			신 암 중	남·여 공 통	신암,조림,예산학구 졸업(예정)자 중 신암학구 희망자
	임성학구			임 성 중	남·여 공 통	양신,오가(신원리,원평리 제외) 예산학구 졸업(예정)자 중 임성학구 희망자
	신양학구			신 양 중	남·여 공 통	신양,운곡(광암리,추광리,미량리 중 신양학구 희망자, 신양면 가지리 거변), 예산학구 졸업(예정)자 중 신양학구 희망자
	대술학구			대 술 중	남·여 공 통	대술, 예산학구 졸업(예정)자 중 대술학구 희망자
	대흥학구			대 흥 중	남·여 공 통	대흥,응봉(노화리,지석리), 평촌(입침리 제외),웅산[장신리(2리 제외),서초정리,장전리,신흥리,동산리], 도내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사회적 배려대상자로서 희망자, 예산학구 졸업(예정)자 중 대흥학구 희망자
	광시학구			광 시 중	남·여 공 통	웅산(서초정리,장전리,신흥리,동산리 제외,장신2리),장곡(천태2리), 장곡·금당(월계리 중 광시학구 희망자), 예산학구 졸업(예정)자 중 광시학구 희망자

시군	학 구 별	중학교명			해 당 초 등 학 교 명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태 안 (7 개 학구)	태안학구	태 안 중	태안여중		남·여 공 통	태안, 백화, 송암, 화동[인평 1리(흔진 다리), 2리, 3리 중 서산 팔봉학구 희망자 제외], 시목(양산2리 1반~2반, 수룡리3~5반, 시목1리, 장대1리), 대기(양산1리, 양산2리3~4반, 장대2리), 팔봉[도내2리1반, (도내1리 중 태안학구 희망자)], 태안학구 졸업(예정)자 중 만리포학구·원이학구·남면학구·근흥학구 희망자 제외
	만 리 포 학 구			만리포중	남·여 공 통	소원, 모항, 시목(시목2리), 태안학구 졸업(예정)자 중 만리포학구 희망자
	창기학구			창 기 중	남·여 공 통	창기, 안면(정당4리, 정당2리 4반)
	안면학구			안 면 중	남·여 공 통	안중, 방포, 안면(정당4리, 정당2리 4반 제외), 고남, 창기
	원이학구			원 이 중	남·여 공 통	원북, 대기(대기1, 2리, 청산2리, 동해2리), 이원, 관동분교장, 도내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사회적 배려대상자로서 희망자, 태안학구 졸업(예정)자 중 원이학구 희망자
	남면학구			남 면 중	남·여 공 통	남면, 삼성, 태안학구 졸업(예정)자 중 남면학구 희망자
	근흥학구			근 흥 중	남·여 공 통	안흥, 신진도분교장, 근흥, 태안학구 졸업(예정)자 중 근흥학구 희망자

※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고 교육장이 지정한 작은학교(초)와 교육감이 지정한 건강학교(초)에 전·입학한 학생이 거주지 중학교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 교육장은 중학교 무시험진학 추진계획에 반영 후 거주지 소재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에 배정 할 수 있다.

신·구 대비표

현행							개정안						
2. 중학구(109학구)							2. 중학구(108학구)						
시군	학구별	중학교명			해당초등학교명		시군	학구별	중학교명			해당초등학교명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		
태안	창기 학구			창기 중	남·여 공통	창기, 안면(정당 4리, 정당2리 4반)	태안	창기 학구			창기 중	남·여 공통	창기, 안면(정당 4리, 정당2리 4반)
	안면 학구			안면 중	남·여 공통	안중, 방포, 안면 (정당4리, 정당2리 4반 제외), 고남		안면 학구			안면 중	남·여 공통	안중, 방포, 안면 (정당4리, 정당 2리 4반 제외), 고남, 창기

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83호, 2022. 8. 30. 시행]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①교육장은 지역별·학교군별 추첨에 의하여 중학교의 입학지원자가 입학할 학교를 배정하되,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설정한 중학구에 따라 입학할 학교를 배정한다.

②추첨에 의하여 중학교를 배정하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 입학지원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그 입학지원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당해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은 교육감이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④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등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동의안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제2호

- 제4조(대상의안) ① 비용추계 대상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으로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중학교 학교군·중학구를 설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 발생이 없으므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충청남도교육청 기획국 학교지원과장 이병철